오산시의회 공고 제2023-52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도현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○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 성을 위해 전통시장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전통시장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(안 제5조제1항제7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3년 10월 23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
○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18132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 : 031)8036-8032

· 전자메일 : kbh0810@korea.kr

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 중 "제9조제5항"을 "제9조제7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9조제5항"을 "법 제9조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시설(아케이드) 설치구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금연구역"이란「국민건강증진	4
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<u>제9조</u>	<u>제9</u>
<u>제5항</u> 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	<u> 조제7항</u>
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한 오산시	
(이하 "시"라 한다) 소재 구역을	
말한다.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시장	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
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	- <u>법 제9조제7항</u>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	
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	
로 지정할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제4항
	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
	외의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시
	설(아케이드) 설치구역
<u>7</u> . (생 략)	<u>8</u> 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